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 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단체소송규칙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기된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소비자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소비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 :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자단체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사업자단체 :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표시의 기준

- 상품명 · 용도 · 성분 · 재질 · 성능 · 규격 · 가격 · 용량 · 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 물품 등을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 사용방법, 사용 · 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 표시의 크기 · 위치 및 방법
- 물품 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법의 목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노사협의회 :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협회의 협의사항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채용 · 배치 및 교육훈련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인사 ·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 재훈련
·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 임금의 지불방법 · 체계 · 구조 등의 제도 개선
- 신 기계 ·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협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노사협의제와 단체교섭을 비교

구분	노사협의제	단체교섭
목적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	근로조건을 유지와 개선
배경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나 쟁의행위의 위협 없이 진행	노동조합의 존립을 전제로 노동쟁의를 수단으로 전개
당사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노동조합대표와 사용자
대상	기업경영, 생산성 향상 등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결과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	단체협약 체결, 법적 효력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의 목적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식품 :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식품첨가물 :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용기·포장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

위해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표시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영양표시 : 식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식품위생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 :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식중독 :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의 목적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가맹사업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본부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맹점사업자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가맹희망자 :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가맹점운영권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가맹지역본부 :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의 목적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 · 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 · 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물류(物流) :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 보관 · 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 조립 · 분류 · 수리 · 포장 · 상표부착 · 판매 ·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물류사업 :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의 사업을 말한다.

물류체계 :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단위물류정보망 :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물류시설 : 물류에 필요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및 이와같은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말한다.

물류공동화 :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貨主企業)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류표준화 :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물류주선업 :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물류보안 : 공항·항만과 물류시설에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및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물류사업 :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으로 구분한다. 이 중 물류서비스업은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이다. 화물운송업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고, 물류시설운영업은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산업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에 포함사항

-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지역의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물류정책기본의 목적

- 100만 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시·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일반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의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